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위원회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별정직 6급 상당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2. 9. 00. 공포·시행)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 청년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(2022. 9. 1. ~ 9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의3제8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“제1호부터 제7호까지”를 각각 “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”로 한다.

7의2.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

별표 1 중 총계 “229”를 “230”으로 하고, 부위원장(차관급) 1 다음에 “별정직 계 1”을 신설하며, 별정직 계 1 다음에 “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 1”을 신설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229”를 “230”으로 하고, 부위원장(차관급) 1 다음에 “별정직 계 1”을 신설하며, 별정직 계 1 다음에 “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 1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3(금융소비자국) ① ~ ⑦ (생략)	제8조의3(금융소비자국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⑧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7의2.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 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 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 된 사항에 대한 법령 등의 제 · 개정	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 호의2----- -----
9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 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	9.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 호의2----- ----- -----
10. (생략)	10. (현행과 같음)
⑨ ~ ⑪ (생략)	⑨ ~ ⑪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29</u>	<u>230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부위원장(차관급)	1		
<u>별정직 계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1의2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29</u>	<u>230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부위원장(차관급)	1		
<u>별정직 계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